

趙重晦 贈行 『餞別詩帖』에 관한 研究*

A Study of Jeonbyol-sicheob Conferred on Cho Joonghoe

金 東 煥(Kim, Dong-Hwan)**

◁ 목 차 ▷

- | | |
|-------------------|---------------|
| 1. 緒 言 | 4. 『餞別詩帖』의 내용 |
| 2. 受給者 趙重晦의 行蹟 | 5. 結 言 |
| 3. 『餞別詩帖』의 書誌의 分析 | <참고문헌> |

< 초 록 >

本稿는 대전광역시 선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餞別詩帖』에 관한 연구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필사본 『餞別詩帖』은 英祖 27年(1751) 謝恩兼冬至使의 書狀官으로 燕行을 떠나는 趙重晦를 송별하는 33인의 시문을 모아 엮은 책으로, 전별시만을 모아 엮은 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책이다. (2) 전별시의 수급자인 조중회는 肅宗 37年(1711)부터 正祖 6年(1782)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다. 그는 英祖 12年(1736)부터 正祖 3年(1779)까지 활동한 정치가로, 의리를 중시하는 굳센 품성의 소유자로 짐작된다. (3) 『餞別詩帖』의 형태는 전체 크기가 47.0×50.0cm로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표지를 제외한 본문은 모두 34장이며, 수록된 시문은 모두 33편이다. (4) 시문의 작자는 주로 자신의 字를 기재하고 있는데, 성과 자를 함께 기재한 것도 있지만 姓의 표기없이 字만을 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고에서 작자의 성명을 밝혀낸 사람은 모두 24명인데, 그 중 성명과 生沒年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인물은 16명이다. (5) 수록된 시문을 형식별로 나누어 보면, 七言詩가 20장, 五言詩가 4장, 文章이 8장이다. (6) 본서에 수록된 6인의 시문을 해석해 본 결과, 시의 내용은 대체로 험난한 여정을 출발하는 使臣에게 용기를 가지라는 격려의 내용과 朝鮮의 사신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충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방의 오랑캐가 세운 淸나라에 朝貢을 바쳐야하는 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내용이 적지 않게 보인다.

要語: 『餞別詩帖』, 전별시, 조중회, 燕行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중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dhkim@joongbu.ac.kr)

접수일: 2010년 5월 13일 최초심사일: 2010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16일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Jeonbyol-sicheob*, owned by the Prehistoric Museum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Jeonbyol-sicheob* is the only collection of farewell poems and proses in Korea. This book included the writings of 33 persons conferred on Cho Joonghoe who was sent as an envoy to China in 1751(27th year of King Yeoungjo). (2) Cho Joonghoe(1711-1782), the receiver of *Jeonbyol-sicheob*, was a politician who worked during 1736(12th year of King Yeoungjo)-1779(27th year of King Jeongjo), and assumed to be faithful to his duty. (3) The size of *Jeonbyol-sicheob* is 47cm×50cm and it has 34 pages for 33 poems except a cover of the book. (4) Many of writers put their nicknames without last name in *Jeonbyol-sicheob*. In this research, 24 writers were identified by their full names, and among them 16 writers' dates of birth and death were confirmed. (5) *Jeonbyol-sicheob* consists of 20 poems using seven-letters by 1 line, 4 poems using five-letters by 1 line and 8 pieces of proses. (6) An analysis of 6 poems in *Jeonbyol-sicheob* shows that the main themes include the words of encouragement for a long and rough journey to China and the advice on the proper attitude as an envoy of the Joseon Dynasty. Also some displeasures about the need for paying attributes to the Ching Dynasty founded by Chinese Barbarians were also expressed in some works.

Key words: Jeonbyol-sicheob, Farewell poems, Cho Joonghoe, Envoy to China

1. 緒 言

年前에 大田廣域市 大德區에 거주하는 典籍所藏家인 金英漢家에서 지정신청 문화재 현지조사를 수행하던 중에 우연히 「餞別詩帖」 1책을 발견하게 되었다.¹⁾ 書名으로 얼핏 보아 이별의 아쉬움을 적은 시를 모은 책일 것인데, 표지에 ‘英祖二十七年辛未/ 謝恩兼冬至使行/ 書狀官 趙重晦 驢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영조 27년(1751) 사은겸동지사의 서장관으로 燕行을 떠나는 조중회라는 사람을 송별하는 전별시를 모은 시첩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별시만을 별도로 모은 詩集은 전해 내려온 책이 거의 없어서 稀貴한 자료로 여겨진다.

餞別의 사전적 의미는 ‘잔치를 베풀어 作別함’²⁾의 뜻이니, 餞別詩란 작별을 위해 베푼 잔치 席上에서 惜別의 정을 담아 지은 詩를 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집이나 개인 시전집에 전별시가 수록된 예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대개는 멀리 臨地로 發令을 받아 떠나거나 他地로 轉勤되는 官僚 또는 遠地로 여행가는 知人을 전별하는 시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³⁾ 그런데 본 「餞別詩帖」에는 전별시 중에서도 특별히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사람을 위해 써준 시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파견되는 사신들은 본래 羅唐간의 교류를 통하여 일찍이 개척된 海路로 통행하였다. 즉 黃海道の 豐川이나 平安道の 宣川에서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 山東省의 登州路를 통해 北京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15세기에 들면서 燕行路程은 陸路로 義州에서 압록강을 건너 遼東지방과 山海關을 거쳐

1) 이 책은 현재 大田廣域市에 기탁되어 大田先史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2009년에 大田廣域市有形文化財(제43호)로 지정되었다.

2)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民衆書館, 1961), 2496.

3) 조선시대 대표적인 전별시로는 崔滄(1503-1549)이 쓴 ‘黃海道觀察使로 赴任하는 李滄을 餞別하는 詩’, 李廷龜(1564-1635)가 쓴 ‘平壤少尹으로 부임하는 李弘靑을 전별하는 시’, 柳得恭(1749-?) , 李集斗(1744-1820) 등이 쓴 ‘龍崗縣令으로 부임하는 紫霞 申緯 送別帖’, 申緯(1769-1847)가 쓴 ‘曲城縣監으로 부임하는 李復鉉을 전별하는 시’ 등이 있다. 또한 『阮堂先生全集』을 보면 권9에서 권10까지 秋史의 詩 384首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9편의 전별시가 실려있다. 전별시 19편 중에는 臨地로 떠나거나 멀리 여행가는 사람을 전별하는 시가 14首이고, 연행을 떠나는 使臣을 위해 써준 시는 5首이다.

북경에 이르는 이른바 中原進貢路가 정착되게 되었다. 중국 내에서의 연행노정이 시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19세기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燕行路程記』에는 이러한 육로의 연행길이가 총 3,069리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⁴⁾ 지금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1,200km 정도가 된다. 영조 41-42년(1765-1766)의 연행기록인 洪大容의 『을병연행록』을 보면, 燕行使가 11월 2일(陰)에 漢城을 출발하여 다음달 27일에 北京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⁵⁾ 북경에 들어가는 데만 55일이 소요되었고, 하루 평균 59리(22.3km)를 이동한 셈이 된다. 육로의 연행노정은 우리나라의 북부지방을 거쳐 산동에서는 靑石嶺과 會寧嶺, 小石嶺 등의 峻嶺을 넘어야 하고, 압록강을 渡河한 뒤에도 八道河와 太子河 등의 큰물을 건너야하는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었다. 당시에 말과 수레 및 도보에 의존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대단히 고단하고 위험한 길이었으며, 특히 음력 동짓달에 출발하는 冬至使의 경우는 燕京에 이르기까지 한겨울의 추위와 싸워야 했으므로 더욱 험난한 旅程이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고려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연행의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작성한 각종 燕行錄이 현재 수백종 전래되고 있다. 이들 연행록에는 우리나라의 사신들이 중국의 수도에 가서 그들이 해낸 일, 본 것과 들은 것, 느낀 것, 준 것과 받은 것, 체험한 일 등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연행록의 기사 중에서 연행 중에 겪은 어려움을 적은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는 使行이 도착하면 관청의 대청과 안팎의 온돌방에 모두 대자리를 깔고 장문마다 종으로 도배를 하였는데, 近年에 와서 점점 나빠지더니 지금은 모두 하지 않아서 오히려 察院만도 못하다.⁶⁾ 이 곳 사람들은 몸집이 크고 모습 이 우뚝한 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 키가 작으매다 먼 길의 바람

4) 『燕行路程記』寫本. 서울대 奎章閣本. 이 책에는 연행노정의 각 경유지 지명과 함께 경유 시간의 거리를 리로 표시하고 있는데, 漢城에서 義州까지 1,050리, 義州에서 柵門까지 120리, 柵門에서 瀋陽까지 445리, 瀋陽에서 山海關까지 787리, 山海關에서 皇城까지 667리로, 총거리가 3,069리가 됨을 기록하고 있다.

5) 홍대용 저 ; 소재영 등 주해, 『주해 을병연행록』 (서울: 태학사, 1997), 9-13.

6) 『老稼齋燕行日記』 1712年 12月 28日條.

과 먼지에 시달려서인지 세 사신을 제외하고 모두가 피죄죄하다. 착용한 衣冠도 대부분 여기에 와서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 도포는 길이가 맞지 않고 紗帽는 눈에까지 내려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니 더욱 한탄스러운 일이다.⁷⁾ 주방의 반찬은 瀋陽 이전에는 먹을 만하더니 그 뒤로는 점점 나빠졌고, 北京에 들어온 이후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밥은 물맛이 나쁜데다 雜米가 섞여 있어서 더욱 나쁘다.⁸⁾ 밤이 되자 옥전현에서는 甲軍을 풀어 চাল원 박을 순시하며 밤새껏 요령을 올렸다. 防備가 이렇듯 엄하여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었으므로 대단히 불편하였다.⁹⁾ 일판문과 二道井은 땅이 움푹 패인 곳이라 비가 조금만 와도 진창이 된다. 봄에 얼음이 풀릴 즈음 자칫 시궁창에 빠지거나 하면 사람이건 말이건 삼시간에 보이지 않게 되어 바로 가까이 있어도 구출하기가 어렵다. 작년 봄에 우리나라 마부도 두 사람이나 빠졌다고 한다.¹⁰⁾

이와 같이 연행노정의 멀고 험난함과 함께 숙소의 불편함, 허술한 의복,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물 및 행동의 제약 등도 연행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朝貢國의 사신으로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심적 부담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중국 측의 관리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거나 조선의 사신을 변방의 蒙古나 琉球國과 같이 취급하여 대접한 사례¹¹⁾가 각종 연행록에는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다.

연행은 대개 5개월 정도 뒤에는 다시 돌아와 헤어졌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험난한 여정 때문에 遠地의 부임과도 같은 전별연이 베풀어져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본 「餞別詩帖」에 수록된 전별시를 수급한 조중희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서른 명이 넘는 인물로부터 전별시를 선사받았으며, 전별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인가? 이에 본고에서 「餞別詩帖」의 수급자인 조중희의 행적을 살펴 그의 인물됨을 살펴보고, 「餞別詩帖」의 서지적 특징과 전별시의 작자 및 내용을 훑어보아 이 책이 가지는 문헌적 가치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금번 연구에서는 수록된 시에 대한 깊이 있는 문학적 해석보다는 이 책을 학계에 소개한다는 점에서 금번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며,

7) 「老稼齋燕行日記」 1713년 1월 1日條.

8) 「老稼齋燕行日記」 1713년 1월 4日條.

9) 「老稼齋燕行日記」 1712년 12월 23日條.

10) 「熱河日記」 1780년 7월 14日條.

11) 「熱河日記」 避暑錄.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인물사와 고전문학의 연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 受給者 趙重晦의 行蹟

『餞別詩帖』의 수급자인 趙重晦는 朝鮮 後期の 文臣으로 肅宗 37년(1711)부터 正祖 6년(1782)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다. 本貫은 咸安이요, 字는 益章이며 諡號는 忠憲이다. 雅號는 쓰지 않았던 듯 찾아볼 수가 없다. 端宗 때의 忠臣인 趙旅의 10代孫이며, 英祖 3년(1727)에 都承旨의 職에까지 오른 바 있는 趙榮福의 아들이다. 趙重晦는 그의 나이가 만으로 25歲가 된 英祖 12년(1736)에 文科에 及第하였는데,¹²⁾ 官職에 임명된 기록은 그 후 3년 뒤인 英祖 15년(1739)에 世子侍講院의 說書에 임명된 것이 최초가 된다. 이후 罷職과 遞職 및 流配 등의 정치적 굴곡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正祖 3년(1779)에 病으로 辭職할 때까지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으며 朝廷의 주요 官職을 두루 거쳤다. 더구나 英祖 末年에는 六曹에서 戶曹와 刑曹를 제외한 나머지의 判書職을 모두 歷任한 바 있는 실력있는 정치가였다. 그러나 자신의 文集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의 학문적 깊이나 성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實錄』에는 英祖・正祖年間に 걸쳐 조중회 관련記事가 모두 134건이나 나타나고 있어서 學者라기보다는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아간 인물로 판단이 된다. 여타의 문집이나 사료에서도 그의 행적을 찾아보기 힘드므로 『朝鮮王朝實錄』의 英祖・正祖年間に 나타난 주요한 기사를 정리해 그의 行蹟을 살펴보고자 한다.

- 英祖 15년(1739) 2월 20일 說書(世子侍講院, 정7품)에 任命되다.¹³⁾

12) 『朝鮮王朝實錄』 正祖 6年 4月 丙申條. “原任吏曹判書趙重晦卒, 重晦字益章, 端廟忠臣趙旅後孫, 英宗丙辰登第, 以正言, 疏言私廟展拜之頻, 刊仕版施宥, 入瀛選, 壬午禍變, 以承旨入侍, 命宣諭傳教, 泣對曰, 臣於十四年臣事之地, 不忍讀此教也. 嚴教謫茂長, 未幾賜環. 英宗常曰, 疾風知勁草, 趙某之請也. …”

13) 上揭書 英祖 15年 2月 丁酉條. “行大政, 去十二月都政, 退行於是日, 以沈聖希爲江原道觀

- 영조 19년(1743) 11월 24일 正言(司諫院, 정6품)에 除授되다.¹⁴⁾
- 영조 19년(1743) 11월 28일 言路의 막힘과 宗廟행사의 禮節 등에 관하여 上疏하다.¹⁵⁾
- 영조 19년(1743) 12월 9일 왕이 위의 상소와 관련하여 趙重晦를 削職하고 그의 이름을 仕版에서 削除하라고 명하다.¹⁶⁾
- 영조 20년(1744) 1월 2일 趙重晦의 상소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청하지 않은 掌令 沈益聖을 削職시키다.¹⁷⁾
- 영조 24년(1748) 3월 2일 副修撰(弘文館, 중6품)에 除授되다.¹⁸⁾
- 영조 24년(1748) 3월 16일 上疏하여 辭職을 청하였으나 왕이 과거의 일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니, 사례하고 다시 入直하다.¹⁹⁾
- 영조 24년(1748) 3월 21일 副校理(弘文館, 중5품)에 除授되다.²⁰⁾
- 영조 24년(1748) 4월 5일 大司諫 李重庚과 承旨 李益輔와 함께 遞職되다.²¹⁾
- 영조 24년(1748) 4월 9일 副校理(弘文館, 중5품)에 다시 除授되다.²²⁾
- 영조 24년(1748) 4월 13일 남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削職되다.²³⁾
- 영조 24년(1748) 12월 21일 修撰(弘文館, 정6품)에 除授되다.²⁴⁾

察使, … 趙重晦爲說書, …”

- 14) 上揭書 英祖 19年 11月 癸卯條. “以尹鳳朝爲副提學, 趙迪命爲大司諫, 趙重晦爲正言, …”
- 15) 上揭書 英祖 19年 11月 丁未條. “正言趙重晦上疏略曰, 言路之閉塞, 未有甚於近日, 章奏之間, 一言忤旨, 則殿下輒疑之以黨論, 竊黜桷棘, 踵背相望, 甚至以桁楊桎梏擬之. … 宗廟奉審修改, 例行於春秋仲月, 載在國典, 不知今秋, 有何事故, 而旬前應行之奉審, 公然退行於晦間, 以致修改之延至於九月耶, … 殿下亦宜自謀, 誠心責躬, 無所隱諱, 廣開言路, 以答天譴也. …”
- 16) 上揭書 英祖 19年 12月 戊午條. “… 上乃命削入侍臺臣之職, 以不請重晦之罪也, 仍命削重晦職, 後又永刊仕版, 勿揀赦前, …”
- 17) 上揭書 英祖 20年 1月 庚辰條. “掌令沈益聖上疏略曰, … 上以不請趙重晦加罪, 命給其章, 削其職, …”
- 18) 上揭書 英祖 24年 3月 丙戌條. “以吳遂采爲大司諫, … 趙重晦·李谿爲副修撰 …”
- 19) 上揭書 英祖 24年 3月 更子條. “副修撰趙重晦上疏辭職, … 上見重晦疏辭, 深悔之曰, … 因賜批曰, 末端附陳者, 筵教開釋, 既知其過, 何累爾父, 重晦即出謝入直, 上又爲之召見.”
- 20) 上揭書 英祖 24年 3月 乙巳條. “以李益輔爲承旨, … 趙重晦爲副校理 …”
- 21) 上揭書 英祖 24年 4月 戊午條. “大司諫李重庚·校理趙重晦·承旨李益輔遞. 鞫罷臺諫當傳啓, 重庚不欲參涉時論, 引避, 上謂避辭苟且, 依啓. 執義李衡萬, 又駁請罷職不叙, 不許, 亦引避而退. 重晦·益輔, 齊攻重庚, 請允臺啓, 上挾雜, 并遞之.”
- 22) 上揭書 英祖 24年 4月 壬戌條. “以金尙星爲吏曹參判, … 趙重晦爲副校理 …”
- 23) 上揭書 英祖 24年 4月 丙寅條. “命削大司憲徐命九·副校理趙重晦職, 正言任師夏罷職不叙, 修撰韓光會削去仕版. … 重晦以光會言爲是, 亦命削職.”
- 24) 上揭書 英祖 24年 12月 辛丑條. “以李宗白爲大司憲, … 趙重晦爲修撰 …”

- 영조 25년(1749) 1월 25일 獻納(司諫院, 정5품)에 除授되다.²⁵⁾
- 영조 25년(1749) 1월 28일 전날 朝參에 불참한 사유로 罷職되다.²⁶⁾
- 영조 25년(1749) 4월 12일 副修撰(弘文館, 종6품)에 除授되다.²⁷⁾
- 영조 25년(1749) 5월 23일 兼司書(世子侍講院, 정6품)에 除授되다.²⁸⁾
- 영조 25년(1749) 6월 9일 校理(弘文館, 정5품)에 除授되다.²⁹⁾
- 영조 25년(1749) 9월 3일 왕에게 尹汲이 左遷된 일을 進言하다가 罷職되다.³⁰⁾
- 영조 25년(1749) 9월 27일 獻納(司諫院, 정5품)에 除授되다.³¹⁾
- 영조 26년(1750) 4월 22일 兼校書館校理(종5품)에 除授되다.³²⁾
- 영조 26년(1750) 5월 1일 자신의 上疏文으로 인하여 罷職되다.³³⁾
- 영조 27년(1751) 6월 28일 副修撰(弘文館, 종6품)에 除授되다.³⁴⁾
- 영조 27년(1751) 7월 4일 兼弼善(世子侍講院, 정4품)에 除授되다.³⁵⁾
- 영조 27년(1751) 9월 24일 兼右贊讀(世孫講書院, 종6품)에 除授되다.³⁶⁾
- 영조 27년(1751) 11월 7일 謝恩兼冬至使의 書狀官으로 燕行을 떠나다.³⁷⁾
- 영조 28년(1752) 4월 22일 燕行에서 돌아오니, 왕이 使臣들을 引見하고 그 나라의 사정을 물어보다.³⁸⁾
- 영조 28년(1752) 12월 20일 弼善(世子侍講院, 정4품)에 除授되다.³⁹⁾
- 영조 29년(1753) 3월 23일 承旨(承政院, 정3품)에 除授되다.⁴⁰⁾

-
- 25) 上揭書 英祖 25年 1月 甲戌條. “以鄭翬良爲大司諫, … 趙重晦爲獻納 …”
- 26) 上揭書 英祖 25年 1月 丁丑條. “… 又請昨日朝參不進獻納趙重晦罷職不叙, 今日次對不參之大司憲曹命敎罷職, 并依施. …”
- 27) 上揭書 英祖 25年 4月 己丑條. “以李彝章爲司諫, … 趙重晦爲副修撰 …”
- 28) 上揭書 英祖 25年 5月 丁卯條. “以金鎭商爲大司諫, … 趙重晦爲兼司書 …”
- 29) 上揭書 英祖 25年 6月 乙酉條. “以洪鳳漢爲都承旨, … 趙重晦爲校理 …”
- 30) 上揭書 英祖 25年 9月 戊申條. “上行召對, 修撰趙重晦曰, 人臣能不變所守, 以徇其君, 乃良臣也. 尹汲不擬申致雲於承旨, 乃盡其職, 而遽出之非宜, 上怒, 以重晦爲偏黨, 而罷之.”
- 31) 上揭書 英祖 25年 9月 壬申條. “以趙重晦爲獻納, 趙噉爲副校理, 徐命九爲同義禁.”
- 32) 上揭書 英祖 26年 4月 甲午條. “以趙榮國爲大司諫, … 趙重晦爲兼校書館校理 …”
- 33) 上揭書 英祖 26年 5月 壬寅條. “罷副校理趙重晦職, 重晦上書言, 李壽鳳黨伐之私, 如見肺肝, 渠旣乞養嘗許, 而突然冒出, 肆行搏擊, 乞加裁抑, 以靖朝象, 敎曰, … 其章給之, 趙重晦罷職不叙.”
- 34) 上揭書 英祖 27年 6月 癸亥條. “以權一衡爲承旨, … 趙重晦爲副修撰 …”
- 35) 上揭書 英祖 27年 7月 戊辰條. “以任謦爲應敎, … 趙重晦爲兼弼善 …”
- 36) 上揭書 英祖 27年 9月 丁亥條. “以尹鳳九爲執義, … 趙重晦爲兼右贊讀 …”
- 37) 上揭書 英祖 27年 11月 己巳條. “謝恩兼冬至正使洛昌君愷, 副使申思建, 書狀官趙重晦出去.”
- 38) 上揭書 英祖 28年 4月 癸丑條. “冬至使洛昌君愷, 副使申思建, 書狀官趙重晦自燕還, 上引見下詢彼國事情.”
- 39) 上揭書 英祖 28年 12月 丙午條. “以李之億爲承旨, … 趙重晦爲弼善 …”

- 영조 33년(1757) 11월 1일 大司諫(司諫院, 정3품)에 除授되다.⁴¹⁾
- 영조 35년(1759) 12월 28일 大司成(成均館, 정3품)에 除授되다.⁴²⁾
- 영조 38년(1762) 5월 19일 宣敎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遠方定配의 명이 내려지다.⁴³⁾
- 영조 38년(1762) 6월 19일 왕이 疏決을 행하여 釋放되다.⁴⁴⁾
- 영조 46년(1770) 1월 8일 吏曹參議(정3품)에 除授되다.⁴⁵⁾
- 영조 46년(1770) 2월 26일 開城留守(종2품)에 除授되다.⁴⁶⁾
- 영조 47년(1771) 12월 14일 右尹(漢城府, 종2품)에 除授되다.⁴⁷⁾
- 영조 48년(1772) 5월 5일 吏曹參判(종2품)에 특별히 除授되다.⁴⁸⁾
- 영조 48년(1772) 8월 18일 判尹(漢城府, 정2품)에 特除되다.⁴⁹⁾
- 영조 49년(1773) 1월 29일 大司憲(司憲府, 정2품)에 除授되다.⁵⁰⁾
- 영조 49년(1773) 4월 19일 禮曹判書(정2품)에 除授되다.⁵¹⁾
- 영조 49년(1773) 5월 12일 지방 儒生의 上書에 回啓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罷職되다.⁵²⁾
- 영조 49년(1773) 10월 13일 大司憲(司憲府, 정2품)에 除授되다.⁵³⁾
- 영조 49년(1773) 12월 22일 兵曹判書(정2품)의 직을 代身 행하다.⁵⁴⁾

-
- 40) 上揭書 英祖 29年 3月 己卯條. “以沈星鎮·俞彥國·趙重晦爲承旨 …”
- 41) 上揭書 英祖 33年 11月 己丑條. “以金善行爲大司憲, 趙重晦爲大司諫, …”
- 42) 上揭書 英祖 35年 12月 甲辰條. “上御熙政堂, 行都政, 以趙榮進爲大司憲, … 趙重晦爲大司成, …”
- 43) 上揭書 英祖 38年 5月 辛巳條. “敎曰, 頃命宣敎, 則承旨趙重晦終不爲之, 而敢曰十四年臣事, 一臣字, 若有君君臣臣之義, 焉敢若此, 此浮於李翼元, 亟命遠竄.”
- 44) 上揭書 英祖 38年 6月 庚戌條. “上御景賢堂, 行疏決, 命放沈益聖·鄭枋·金漢老·鄭昌順·李海重·李世演·李翼元·趙重晦, 刑曹殺獄, 多全活者.”
- 45) 上揭書 英祖 46年 1月 丙戌條. “敎曰, … 韓光會冢宰除授, 趙重晦吏議除授.”
- 46) 上揭書 英祖 46年 2月 癸酉條. “以趙重晦爲開城留守, 尹得養爲大司憲, …”
- 47) 上揭書 英祖 47年 12月 庚辰條. “以閔百興爲刑曹參判, 趙重晦爲右尹, …”
- 48) 上揭書 英祖 48年 5月 己亥條. “吏曹參判具震遠牌, 依閔百興例, 罷職不叙, 特除趙重晦爲吏曹參判, …”
- 49) 上揭書 英祖 48年 8月 庚辰條. “敎曰, 知勁草識誠臣, 可謂今日內局提調·副提調, 今於勳駕, 京兆宜導駕, 趙重晦特除判尹, 以任鼎遠爲承旨, …”
- 50) 上揭書 英祖 49年 1月 己未條. “以鄭尙洵爲吏曹參判, … 趙重晦爲大司憲, …”
- 51) 上揭書 英祖 49年 4月 丁未條. “以韓光會爲吏曹判書, 趙重晦爲禮曹判書, …”
- 52) 上揭書 英祖 49年 5月 庚午條. “罷禮曹判書趙重晦之職, 以鄉儒上書, 不善回啓也.”
- 53) 上揭書 英祖 49年 10月 戊戌條. “以趙重晦爲大司憲, 李得淳爲大司諫.”
- 54) 上揭書 英祖 49年 12月 丙午條. “上御集慶堂, 親行都政, … 上曰, 予當踐言, 兵曹判書具允

- 영조 51년(1775) 3월 18일 吏曹判書(정2품)에 특별히 除授되다.⁵⁵⁾
- 정조 즉위년(1776) 3월 10일 殯殿都監의 提調에 임명되다.⁵⁶⁾
- 정조 즉위년(1776) 3월 11일 禮曹判書(정2품)의 직에서 罷職되다.⁵⁷⁾
- 정조 즉위년(1776) 5월 11일 咸鏡道觀察使(종2품)에 除授되다.⁵⁸⁾
- 정조 즉위년(1776) 10월 17일 同推를 소홀히 행한 죄로 從重推考되다.⁵⁹⁾
- 정조 1년(1777) 9월 7일 咸鏡道觀察使의 직에서 遞職되다.⁶⁰⁾
- 정조 2년(1778) 1월 5일 工曹判書(정2품)에 除授되다.⁶¹⁾
- 정조 2년(1778) 3월 23일 議政府 左參贊(정2품)에 除授되다.⁶²⁾
- 정조 3년(1779) 8월 14일 吏曹判書(정2품)에 除授되다.⁶³⁾
- 정조 3년(1779) 9월 5일 病을 이유로 辭職하다.⁶⁴⁾

그의 정치적 歷程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영조 19년(1743) 司諫院의 正言에 임명된 때의 일이다. 그는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정언의 직에 임명된 지 불과 4일 만에 長文의 상소를 올린 것이다. 상소문에서 그는 당시 言路가 폐색되어 조정의 중신들이 정책을 결단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며, 종묘를 奉審하고 修改하는 예절을 國典에 적힌 대로 하지 않음도 결국 언론이 막힘으로 인한 결과라고 進言하였다. 이 상소로 영조는 매우 진노하여 여러 신하들 앞에서 책상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중희에게 몹시 모욕을 당해 왕의 자리를 傳位할 뜻까지

鈺許遞, 以趙重晦代之.”

- 55) 上揭書 英祖 51年 3月 乙丑條. “以金鍾正爲兵曹判書, 趙重晦爲吏曹判書, 皆特除也.”
- 56) 上揭書 正祖 卽位年 3月 辛巳條. “殯殿·國葬·山陵三都監, 以申晦爲摠護使, 趙重晦·金漢蒼·鄭存謙爲殯殿都監提調, …”
- 57) 上揭書 正祖 卽位年 3月 壬午條. “遞戶曹判書蔡濟恭, 罷禮曹判書趙重晦. 濟恭以校役之相妨也, 重晦以禮節之顛錯也, …”
- 58) 上揭書 正祖 卽位年 5月 辛巳條. “… 以李滄爲刑曹判書, … 趙重晦爲咸鏡道觀察使, …”
- 59) 上揭書 正祖 卽位年 10月 乙卯條. “命咸鏡道觀察使趙重晦辭辭, 從重推考, 咸興判官李遠培拿問, …”
- 60) 上揭書 正祖 1年 9月 己巳條. “遞咸鏡道觀察使趙重晦, 以趙垓代之.”
- 61) 上揭書 正祖 2年 1月 丙寅條. “以李衍祥爲司憲府大司憲, … 趙重晦爲工曹判書.”
- 62) 上揭書 正祖 2年 3月 癸未條. “以趙重晦爲議政府左參贊, 鄭弘淳爲刑曹判書.”
- 63) 上揭書 正祖 3年 8月 乙丑條. “… 以趙重晦爲吏曹判書, 李秉模爲吏曹參議, 權滄爲兵曹判書.”
- 64) 上揭書 正祖 3年 9月 丙戌條. “吏曹判書趙重晦引病許遞, …”

보였다고 한다.⁶⁵⁾ 결국 영조는 조중회를 파직하고 仕版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하며 赦令이 있기까지는 용서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후에 조중회의 일로 그에게 加罪를 청하지 않은 관리가 삭직되기도 하였으며, 조정의 중신들로부터 조중회의 삭직이 너무 심하다는 상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왕은 윤허하지 않았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朋黨의 弊害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蕩平策을 시행해 왔다. 동왕 5년(1729)에 봉당을 타파하고 각 당파의 人才를 함께 쓰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己酉大處分으로 영조의 본격적인 탕평정치가 시작되었다. 또한 동왕 16년(1740)에 내려진 庚申處分으로 四色黨派를 모두 등용하는 대탕평이 제창되었고, 士林政治의 상징인 淸要職이 혁파되는 등 국가관료체제가 개혁되었다. 이후에는 탕평파의 정권이 장기간 유지되는 등 政局이 안정되게 되었다. 조중회의 상소사건은 바로 경신처분이 내려진 3년 뒤의 일이다. 탕평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내려진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올라온 상소로 인해 영조가 매우 진노하고 그를 파직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정국의 추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영조는 조중회가 偏黨의 의도로 상소문을 작성한 것으로 여겼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여하튼 그는 상소문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다시 관가에 복귀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5년 뒤인 동왕 24년(1748)의 일이다. 그러나 명분을 앞세운 듯, 辭職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뒤 결국 왕의 사과를 얻고서야 入直하게 된다. 그 후에도 타인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대변하다가 두 번이나 파직된 적이 있다. 동왕 25년(1749)에 탕평책을 반대하다 좌천된 尹汲을 옹호하다가 파직된 일이 바로 그것이다. 파직을 각오하고서도 남을 위한 상소를 올린 사실은 인간적인 의리를 중시한 일면이 엿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볼 때, 그는 아마도 우직하고도 剛直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영조가 그의 성품과 정치적 성향을 ‘군센 풀’로 비유한 것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⁶⁶⁾ 『正祖實錄』에 기록된 조중회의 卒記에서도 “영조가 항상 말하기를, ‘거센 바람에 군센

65) 上揭書 英祖 19年 11月 戊申條. “是日, 上御熙政堂, 行三覆, 上盛怒趙重晦之疏對, 諸臣拍案流涕曰, 趙重晦侮辱予太甚, 予將不復臨此位也, 仍示傳位東宮之意, 辭教多不忍聞者, 諸臣相繼力爭乃止, …”

66) 前揭書 英祖 48年 8月 庚辰條.

풀을 알 수 있다'라고 한 문장은 바로 조중회를 두고 한 말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⁶⁷⁾ 영조가 오랫동안 자신을 보필했던 신하에 대한 평가를 함축적이고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니, 이를 통해서도 그의 성품을 어느 정도는 탐색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영조 27년(1751) 11월 7일에 謝恩兼冬至使의 일원(書狀官)으로 燕京으로 떠나 이듬해 4월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때 正使는 宗臣인 洛昌君 李樞, 副使는 戶曹參判 申思建이 맡고 조중회 자신은 書狀官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나이 만 40세 때의 일이다. 『餞別詩帖』에 실린 시문들은 바로 연행을 떠나기 직전인 그해 10월 말과 11월 초에 쓰여져 수급받은 것이다. 사신으로 임명되어 연행의 길을 떠나기 전 33인이라는 적지 않은 지인들로부터 석별의 정을 담은 전별시문을 받은 것은 평소 의리를 중시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冬至使를 다녀온 뒤 조중회의 관직생활은 비교적 순탄하여 승진을 거듭해 결국 영조 29년(1753)에 堂上官의 고위직인 승정원의 承旨로 발탁된다. 동왕 38년(1762)에는 宣敎를 널리 행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遠地定配의 명이 내려져 茂長(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으로 유배되었다. 그의 정치 역정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며 처음이자 마지막 유배이다. 그러나 불과 1달 뒤에 영조는 疏決을 행하여 그를 석방한다. 이후 개성유수, 사헌부의 대사헌을 거쳐 영조 말년까지 육조의 판서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영조가 승하하자 빈진·국장·산릉의 3개 都監이 설치되었는데, 조중회는 김한기, 정존겸과 함께 殯殿都監의 提調로 임명되어 喪禮를 지휘하였다.

정조 즉위년(1776) 5월에는 6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함경도 관찰사에 임명되게 된다. 그해 함경도에는 혹심한 기근이 들어 餓死者가 늘어났으므로 진휼책의 시급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행한 바 있다.⁶⁸⁾ 그러나 동년 10월에 조중회는

67) 前揭書 正祖 6年 4月 丙申條.

68) 前揭書 正祖 卽位年 9月 丙子條. “領議政金尙喆覆奏, 咸鏡監司趙重晦狀啓, 請交濟倉田米一萬石, 大豆五千石, 備局勾管, 皮穀一萬石, 田米一萬石, 劃給三衙門, 當年糴耗, 依戊子例, 三分一取用, 空名帖一千張, 成送監兵營, 各邑課米停減, 三色貢米二千石, 取補賑資, 公私賤未受補充隊價米, 依舊例許給, 從之.”

관내의 죄인에 대한 推問을 법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그를 從重推考케 하라는 명이 있었다. 그 이듬해 1월에는 狀啓를 올린 문장 중에 홍계희 등 역적의 성을 제거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從重推考하라는 명도 내려졌다.⁶⁹⁾ 뿐만 아니라 그를 추고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먼저 파직부터 시키라는 상소가 잇따르는 등⁷⁰⁾ 함경감사로 재직한 말년에 상당한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문자 간에 다소의 실수가 있는 것으로 경솔하게 파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처벌을 미루었다. 결국 8개월이 지난 동년(1777) 9월에 조중회를 咸鏡監司의 職에서 遞職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된 듯하다. 영조에 의해서 과감하게 추진되었던 탕평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때까지도 파벌간의 알력이 잔존하고 있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잠시 工曹判書와 議政府 左參贊을 거친 뒤, 동왕 3년(1779) 9월에 이조판서의 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정조 6년(1782) 4월에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이듬해에 忠憲이라는 시호가 추증되었다.

조중회는 자신의 문집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의 학문적 깊이나 성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관직 생활의 초반기에 홍문관과 세자시강원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經·史의 강론에 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陶菴集」, 「陶菴科詩」, 「四禮便覽」 등의 저술을 남긴 陶菴 李緯(숙종 6년: 1680~영조 22년: 1746)의 門下生이다. 도암은 숙종 15년(1715)에 호조참의를 거쳐 부제학의 벼슬에까지 올랐는데, 이 때부터 노론의 중심인물로 소론과 대립하면서 여러 차례의 정치적 풍랑을 겪었다. 英祖代에 이르러서도 의리론을 내세우며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명분론과 의리를 앞세운 조중회의 강직한 성품과 정치적 성향은 아마도 그의 스승에게서 영향받은 바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69) 上揭書 正祖 1年 1月 丁亥條. “敎曰, 咸鏡道放未放啓本中, 趾海·述海·翼雲等, 俱不去其姓, 至於尙魯具姓, 又從以具官, 大是矇然. 咸鏡監司趙重晦緘辭, 從重推考.”

70) 上揭書 正祖 1年 1月 己丑條. “掌令尹弼秉上疏曰, … 臣伏見傳敎下者, 咸鏡監司趙重晦放未放啓本中, 逆賊趾海·述海·翼雲等, 不去其姓, 劇賊尙魯, 俱書職姓, 緘辭未到之前, 雖未知其事端之如何, 而其所關係, 不輕而重, 不可推考而止, 先施罷職之典宜矣. 批曰, 儒臣緘問, 古無其禮, 北伯事, 不過文字間疏漏, 臨賑輕遞, 其於北民何哉.”

3. 「錢別詩帖」의 書誌的 分析

3.1 「錢別詩帖」의 형태

이 책은 書名으로 알핏 보아서는 折帖裝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낱장으로 필사된 시문을 두꺼운 壯紙에 1장씩 붙이고 한 장의 표지로 둘러싼 책자형으로 외형적으로는 마치 포배장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錢別詩帖」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錢別詩帖 / 李箕鎮(1687-1755) 等著 - 筆寫本.

- [筆寫地不明]: [李箕鎮 等 筆寫], 英祖 27년(1751).

1冊(36張): 行字數不定 ; 47.0×5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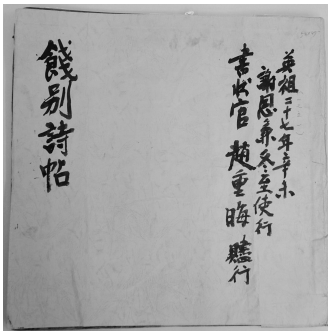
표지를 제외한 본문은 모두 34장에 이른다. 대부분 필사된 낱장의 시문을 1장씩 장지에 붙였고, 1편의 시문은 내용이 길어서 2장에 이어 붙였으므로 수록된 시문은 모두 33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권수면에 수록된 李箕鎮의 시문이 시작되기 전 우측 끝단에는 ‘辛未陽月下澣 權景賀 稿’라는 목서가 있는 別紙가 따로 붙어있는데 정작 시문은 보이지 않는다. 본래 권경하라는 인물에게서 받은 詩文이 있었지만 후대에 본문이 缺落된 채 粧冊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조중회는 모두 34인 혹은 그 이상의 지인으로부터 전별시를 받았고, 「錢別詩帖」으로 命名한 이 책은 33인의 시문만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가 47cm이고 가로가 50cm에 이르고 있어 거의 正方形에 가깝고 보통의 책보다는 폭과 길이가 廣大한 편이다. 본문을 이루고 있는 시문은 폭이 32.7cm가 대부분인데, 폭이 가장 좁은 것은 27.4cm이고 가장 넓은 것은 40.3cm인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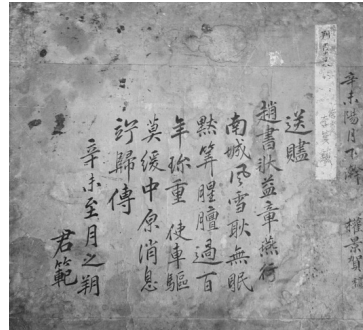
表紙에는 우측 상단으로부터 ‘英祖二十七年辛未/ 謝恩兼冬至使行/ 書狀官趙重晦 贐行’이라는 墨書가 있고, 좌측에는 ‘錢別詩帖’이 목서되어 있다. 표지는 本文의 종이보다 더 얇고 紙質이 비교적 근대의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책이

成冊된 이후 後代에 다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趙重院의 시문이 적혀져 있는 마지막 면은 먹이 심하게 지워져서 詩文을 거의 判讀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용지 중에는 우측 하단부에 四君子가 찍혀진 詩箋紙가 모두 5장이 보이는데, 난초가 찍혀진 시전지가 2장, 매화, 국화, 대나무를 찍은 시전지가 각 1장씩이다. 紙面은 변색이 되거나 가장자리에 얼룩이 번진 면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시문의 우측 상단에는 ‘判書元公景夏字華伯’과 같이 당해 시 작자의 관직·성명·字 또는 雅號를 묵서한 장방형의 箋紙가 붙어 있다. 대부분의 시문에 작자가 자신의 성명 대신 字를 썼으므로 후대에 누군가가 작자의 관직·성명 등을 묵서하여 붙인 것이다. 일부의 전지는 본래 묵서한 내용이 지워져 현 소장자가 다시 펜으로 부기한 것도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전지는 제 16장까지는 붙어있으나 그 이후의 장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1> 「餞別詩帖」의 表紙



<그림 2> 卷首面: 李箕鎭의 餞別詩

시문의 書頭에는 ‘奉隲/ 趙書狀益章燕行’, ‘奉送/ 趙學士赴燕’ 또는 ‘奉別/ 趙學士益章赴燕’ 등과 같이 연행을 떠나는 조중회를 송별한다는 내용의 제목을 붙인 다음 시문이 시작된다. 시문이 끝난 다음에는 詩作의 시기와 작자가 쓰여 있다. 시문을 쓴 해는 모두 辛未로 되어 있어서 실록의 기록과 같이 그가 북경으로 출발한 해인 영조 27년(1751)과 일치한다. 시문을 지은 날짜는 ‘孟冬’ 또는 ‘陽月下

辭’과 같이 대략적인 시기를 적은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달과 일자를 명시한 것도 보인다. 즉 ‘至月之朔’은 음력 11월 초하루이고, ‘冬至前一日’로 쓴 것은 10월 30일을 나타낸 것이다. 시를 쓴 날짜가 각기 다른 것으로 보아 전별연 석상에서 함께 시를 지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조중희가 연행을 떠난 날짜가 11월 7일이니 떠나기 직전에 지인들이 각기 시문을 지어 보내준 것이다.

시문의 書體는 작자들이 손수 쓴 것이라 楷書體와 行書體 및 草書體 등으로 다양하고 篆書로 쓴 시문도 1장이 보인다.

3.2 錢別詩의 作者

『錢別詩帖』에서는 시문을 쓴 해와 月日 다음에 작자를 표기하고 있는데 매우 다양한 형태로 記載되어 있다. ‘友人西河任聖周稿’와 같이 아호와 성명을 병기한 경우, ‘宋瑩中’처럼 성명만을 기재한 경우는 작자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錢別詩의 특성상 수급자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인 듯 주로 자신의 字를 기재하고 있는데, 성과 자를 함께 기재한 것도 있지만 姓의 표기없이 字만을 쓴 경우가 다수 있어서 작자를 밝히기가 무척 까다롭다. 또한 ‘紺岳山人’과 같이 別號를 쓰거나, 작자명을 쓰지 않고 落款만 날인한 것도 각기 1장씩 보인다. 시문의 우측 상단에 붙은 箋紙에 기재된 내용과 人名字號辭典 및 각종 문집 등을 통해 작자를 탐색해 보았는데, 작자의 성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모두 24명이다. 그러나 성명과 生沒年까지를 정확하게 밝혀낸 인물은 전체의 절반 정도인 17명에 불과하다. 『錢別詩帖』의 작자를 수록된 순서대로 성명과 생몰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별시의 작가

順番	姓名	生沒年	備考
1	李箕鎮	1687~1755	君範(字)으로 기재.
2	元景夏	1698~1761	棟湖元華伯으로 기재.
3	李天輔	1698~1761	宜叔(字)으로 기재.
4	洪啓禧	1703~1771	洪純甫(字)로 기재.
5	洪鳳祚	1680~1760	虞瑞(字)로 기재.

順番	姓名	生沒年	備考
6	尹鳳五	1688~1769	尹季章(字)으로 기재.
7	韓億增		韓大叔으로 기재.
8	李益輔	1708~1767	
9	金時燾	1700~1767	金雉明(字)으로 기재.
10	金陽澤	1712~1777	箋紙에 의거함.
11	洪益三	? ~1756	季友로 기재.
12	鄭□□		
13	俞彥述	1703~1773	俞繼之(字)로 기재.
14	李顯道		
15	金用謙	1702~1789	落款 3顆 중 중간 낙관에 '金用謙'이捺印되어 있음.
16	任聖周	1711~1788	
17	李宜哲	1703~1778	
18	俞彥民	1709~1773	俞伊天(字)로 기재.
19	朴士彬		
20	□準海		
21	安如松		
22	趙宜陽	1719~1808	義卿(字)으로 기재.
23	□永受(?)		
24	宋瑩中	1721~1786	
25	洪景海		
26	俞汝人		
27	金由行		
28	□載中		
29	朴興叔		
30	紺岳山人		'三從'으로 기재.
31	趙重明		達夫(字)로 표기되어 있고, 낙관에 '趙重明'이 날인.
32	趙□□		'堂兄'으로만 기재.
33	趙重院		

먼저 生沒年이 밝혀진 전별시의 작자를 연령으로 살펴보면, 조중회와 나이가 同甲인 사람은 '友人'이라고 쓴 任聖周 한 사람뿐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은 金陽澤과 趙宜陽 및 宋瑩中 세 사람으로 宋瑩中이 이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다. 그 외 나머지 작자 12人是 모두 조중회보다 나이가 많은 인물이다. 그들 중에서 가장 年長者는 1680년생인 洪鳳祚로 조중회보다 31세나 年上인 사람이다. 조중회가 서장관으로 연행을 떠난 해의 나이가 40세이므로 흥봉조가 전별시를 지어준 해의 나이는 71세가 되는 셈이다. 시문의 수록순서는 대개 연장자순이거

나 당시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여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른 번째에 수록된 시문의 저자는 紺岳山人이라는 별호를 쓰고 있는데, 앞에 三從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조중희와 8寸 인척간이다. 서른두 번째의 시문은 저자를 밝힐 수 없으나 堂兄아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조중희의 집안 사람임을 알 수 있다. 紺岳山人을 비롯한 네 사람의 인척이 쓴 시문은 순서를 맨 뒤로 배정해 두고 있는 것이다.

생물년이 확실한 시문의 작자 중에서 주요한 인물의 面面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箕鎮: 숙종 13년(1687)~영조 31년(1755). 본관은 德水. 자는 君範, 아호는 牧谷. 寒水齋 權尙夏의 문인. 숙종 43년(1717)에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예문관과 홍문관에서 재직하였다. 景宗 1년(1721) 헌납으로 재직할 당시, 王世弟로 책봉된 延祔君(뒤의 영조)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발설한 柳鳳輝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辛壬士禍 때 파직된 바 있다. 영조의 즉위와 함께 바로 등용되어 홍문관교리, 시독관을 거쳤다. 그러나 신임사화를 일으킨 少論에 대해 논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奏請하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받기도 하였다. 영조 1년(1725)에 승지에 임명된 뒤 吏曹參議를 거쳐 영조 3년(1727)에 副提學 등을 역임하고 江華府 留守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왕세자의 관례 때 俸箋文을 빠뜨린 죄로 파면당해 낙향하였다. 이듬해인 동왕 4년(1728)에 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大司成에 임명되었는데 난이 평정되자 다시 낙향하였다. 동왕 5년(1729)에 다시 발탁된 이후 함경도 관찰사, 대사간, 경상도관찰사, 형조판서, 경기도관찰사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조중희가 서장관으로 연행을 떠난 해의 바로 2년 전인 영조 25년(1749)에 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바 있다. 조중희에게 전별시를 지어 보내준 해에는 廣州府留守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관직은 判敦寧府使에까지 이르렀으며, 시호는 文憲이다.

元景夏: 숙종 24년(1698)~영조 37년(1761). 본관은 原州. 자는 華伯, 아호는 蒼霞 또는 肥窩. 景宗 1년(1721)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영조 12년(1736)에 정시문과에 壯元하였다. 동왕 15년(1739)에 正言으로 재직할 당시 왕의 뜻을 받들어 朋黨이 나라를 그르치는 禍根이 된다는 것과 蕩平策을 실시할 것을 進言하였다. 동왕 20년(1744)에 이조참판으로 재임 시에 判書인 李箕鎮과의 마찰로 인하여 이기진은 홍주목사로 자신은 청풍부사로 좌천된 적이 있다. 전별시를 지은 해인 동왕 27년(1751)에는 判敦寧府使兼 世孫傳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⁷¹⁾ 그는 任珽·鄭羽良·吳光運·尹游 등과 함께 老·少論만의 탕평인 小蕩平을 반대하고 동서와 남북을 모두 포괄하는 大蕩平을 창도하였다. 그러나 동갑의 나이이자 옛 동료이던 晉庵 李天輔와 絶交를 선언하여 敵과 같은 사이가 되었는데,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元朋·李朋이라 일컫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노론들은

71) 上揭書 英祖 27年 8月 戊午條. “以李光滉爲執義, … 元景夏爲判敦寧 …”, 27年 9月 乙丑條. “… 元景夏爲兼 世孫傳 …”

원경하가 蕩平臣으로 자임하지만 남모르게 남인과 소북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세력을 도모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탕평노력과 黨人을 고루 대하는 인품을 칭송하였다. 영조의 신임이 두터워 그가 죽자 왕이 친히 제문을 지었고, 領議政에 追贈되었다. 시호는 文忠이다.

李天輔: 숙종 24년(1698)~영조 37년(1761). 본관은 延安. 자는 宜叔, 아호는 晉庵. 공교롭게도 위의 원경하와 생몰년이 같은 인물이다. 영조 15년(1739) 謁聖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였다. 이듬해에 교서관 正字에 임명된 뒤 校理·獻納·掌令 등의 연관직을 역임하였고 동왕 25년(1749)에는 吏曹參判에 올랐다. 조중회에게 전별시를 지어 보낸 해에는 兵曹判書의 직에 있었다. 동왕 28년(1752)에 右議政에 승진되었고, 같은해 左議政에 올랐다가 領敦寧府事로 전임되었다. 동왕 37년(1761)에 領議政에 올랐으나, 莊獻世子の 平壤遠遊事件으로 인책되자 음독 자결하였다. 허식을 차리지 않고 남과 談論하기를 즐겼으며, 시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저서로 『晉庵集』이 있고, 시호는 文簡이다.

洪啓禧: 숙종 29년(1703)~영조 47년(1771). 본관은 南陽. 자는 純甫, 아호는 淡窩. 陶菴 李緯의 문인. 영조 13년(1737) 別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正言에 除授되었다. 동왕 18년(1742)에 北道監賑御史로 파견되어 함경도의 賑政을 살폈고, 이듬해에 다시 北道別遣御使로 파견되었다. 이때 그 지방의 地形과 物情을 상세히 수록한 地圖를 작성하여 復命함으로써 영조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동왕 19년(1743) 五衛의 副司果로 재직할 당시 咸鏡監事 朴文秀의 부정혐의를 탄핵하다가 黨色으로 공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削職된 바 있으며, 그 이듬해에 承旨로 특채되었다. 동왕 24년(1748)에는 日本 幕府의 장군인 德川家重의 承襲을 축하하기 위한 通信上使로 차정되어 일행 500여 명을 이끌고 일본에 다녀왔다. 동왕 25년(1749) 충청도관찰사로 재직 시 時務의 능력을 인정받아 다음해에 병조판서로 발탁되었다. 이 때 영의정 趙顯命과 함께 均役法 제정을 주관하여 均役事目を 작성,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균역법이 시행상 문제가 많다는 重臣들의 비난을 받고 知中樞府事로 물러났다가, 동왕 30년(1754)에 이조판서로 재기용되었다. 동왕 37년(1762)에 경기도관찰사로 있으면서 思悼世子の 잘못을 고변함으로써 세자가 죽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뒤 이조와 예조의 판서를 거쳐 判中樞府事로 봉조하가 되었다. 그는 儒學者로 자처하였으나 그보다는 시무에 밝고 經世致用에 많은 관심을 보인 개혁실천주의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이재의 문인이라 하였지만 대다수의 이재 문인으로부터 배척당하였다. 한때는 탕평파에 접근하여 출세하였지만 후에는 이들과 不和하고 영조 계비의 아버지인 金漢壽와 내통하는 등 권력을 쫓아 인간관계를 반복하였다. 시호는 文簡으로 추증되었다.

洪鳳祚: 숙종 6년(1680)~영조 36년(1760). 본관은 南陽. 자는 虞瑞, 아호는 孟山. 農巖 金昌協의 문인. 黨色은 노론으로, 경종 2년(1722)에 일어난 辛壬士禍 때에 온성으로 유배되었다. 영조의 즉위와 함께 유배에서 풀려나 이듬해인 영조 1년(1725) 중광시문과에 올라

로 급제하였다. 동왕 14년(1738)에 獻納, 그 이듬해에는 副應教, 동왕 16년(1740)에 執義를 거쳐 동왕 23년(1747)에는 강원도관찰사를 지냈다. 조중희에게 전별시를 써서 보내주기 1년 전인 동왕 26년(1750)에 成均館 大司成에 올랐으며, 그 뒤 벼슬은 知中樞府事에까지 이르렀다. 글씨를 잘 써 <新羅始祖王墓> 등의 비문이 남아 있다.

李益輔: 숙종 34년(1708)~영조 43년(1767). 본관은 延安. 자는 士謙. 영조 15년(1739) 謁聖문과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조중희보다 나이는 3년 위인데 과거의 급제는 3년이 늦다. 동왕 24년(1748) 3월 21일 같은 날에 이익보는 승지로 조중희는 부교리로 제수⁷²⁾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鞫問의 傳啓와 관련하여 두 사람이 함께 대사간 이증경을 공격하다가 동시에 遞職⁷³⁾ 일도 있었다. 이를 미루어 보아 두 사람은 아마도 정치적 뜻을 같이한 同志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동왕 25년(1749)에 충청도관찰사로 나아가 치적을 남겼으며, 전별시를 지을 당시에는 충청도관찰사에서 체직되어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다.⁷⁴⁾ 동왕 28년(1752)에는 左承旨에 임명되었고, 동왕 32년(1756)에 大司憲이 되고 이어서 兵曹判書·守禦使·吏曹判書를 거쳐 左參贊에까지 이르렀다.

金時稔: 숙종 26년(1700)~영조 43년(1767). 본관은 安東. 자는 穉明, 아호는 菴川. 경종 1년(1721)에 進士가 되고, 영조 11년(1735) 增廣詩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여 史官에 임명되었다. 당색은 노론에 속했다. 奎章閣待教로 재직 시에 趙泰耆, 劉鳳輝, 李光佐 등 소론 일파의 처벌을 주청하다가 탕평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흑산도에 유배된 적이 있다. 동왕 16년(1740)에 修撰으로 復官되었고, 전별시를 지을 당시에는 승지로 재직 중이었다.⁷⁵⁾ 동왕 31년(1755)에는 大司諫에 올랐다. 동왕 35년(1759)에 부제학을 제수받고 그 직을 사양하는 글을 올렸는데, 글 속에 불경스런 문구가 있다 하여 다시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5년 뒤인 동왕 40년(1764)에 유배에서 풀렸다. 순조 6년(1806)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忠正이다.

金陽澤: 숙종 38년(1712)~정조 1년(1777). 본관은 光山. 자는 士舒, 아호는 健庵. 沙溪 金長生의 5世孫. 祖父는 숙종의 장인인 萬基이고 父親은 예조판서를 지낸 바 있는 鎭圭로, 조부와 부 및 자신까지 3대가 모두 大提學을 역임한 당대 명문가 집안 출신이다. 영조 17년(1741) 生員試에 합격하였고, 동왕 19년(1743)년 謁聖文科에 丙科로 급제한 뒤 헌납과 부제학을 거쳐 元孫師父·大司成·右賓客·大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전별시를 지은 해에

72) 上揭書 英祖 24年 3月 乙巳條. “以李益輔爲承旨, … 趙重晦爲副校理 …”

73) 上揭書 英祖 24年 4月 戊午條. “大司諫李重庚·校理趙重晦·承旨李益輔遞. 鞫罷臺諫當傳啓, 重庚不欲參涉時論, 引避, 上謂避辭苟且, 依啓. 執義李衡萬, 又駁請罷職不叙, 不許, 亦引避而退. 重晦·益輔, 齊攻重庚, 請允臺啓, 上挾雜, 并遞之.”

74) 上揭書 英祖 27年 5月 辛巳條. “掌令姜必慎上書言, 前忠清監司李益輔, 無端見遞 聽聞俱駭, 盖自均役之議行 …”

75) 上揭書 英祖 27年 3月 辛亥條. “以金時稔爲承旨, …”

는 교리로 재직하였다.⁷⁶⁾ 死後에 그의 아들 金夏材가 逆臣으로 몰려 官職을 追奪당했다가 뒤에 다시 復官되어 領敦寧府事に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健庵集』이 있으며, 시호는 文簡이다.

洪益三: ?~영조 32년(1756). 본관은 南陽. 孝宗의 外戚으로 효종의 딸 淑安公主의 曾孫子이다. 영조 17년(1741) 正言과 司書를 거쳐 동왕 21년(1745)에 부교리·교리·헌납을 역임하였다. 그 이듬해에 부수찬·수찬을 거쳐 동왕 23년(1747)에 다시 헌납·사서를 거쳐 弼善·司諫을 역임하였다. 전별시를 지은 해에는 승지에 제수된 바 있다.⁷⁷⁾ 주로 言官職에 있으면서 빈민구휼, 軍額輕減, 왕세자에 대한 書筵을 속행할 것을 건의하고, 언론개방을 역설하였다. 外戚臣으로 학문이 뛰어나지는 못하였으나 관직에서 청렴결백하고 기개가 곧아 일처리가 분명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俞彥述: 숙종 29년(1703)~영조 49년(1773). 본관은 杞溪. 자는 繼之, 아호는 松湖 또는 知足堂 또는 西阜. 영조 5년(1729) 進士試에 합격하였고, 동왕 12년(1736)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檢閱이 되었다. 동왕 20년(1744)에 성균관 典籍에 제수되고, 禮曹정랑을 거쳐 兪關으로 활동하였다. 司諫으로 재직 시에는 趙泰耆, 劉鳳輝, 李光佐 등 소론 일파를 성토하였다. 동왕 25년(1749) 冬至使의 書狀官으로 연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전별시를 지을 당시에는 世子侍講院의 輔德에 임명되어 재직 중이었다.⁷⁸⁾ 동왕 48년(1772)에 대사헌을 거쳐 知中樞府事로 致仕하고 耆老所에 들어갔다. 直諫을 잘하여 영조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시문에 뛰어났다. 문집으로 『松湖集』이 있으며, 시호는 靖憲이다.

金用謙: 숙종 28년(1702)~정조 13년(1789). 본관은 安東. 자는 濟大, 아호는 嘯嘯齋. 숙종 때에 영의정까지 지낸 바 있는 文谷 金壽恒의 孫子. 辛壬士禍로 伯父인 金昌集이 사사될 때 全州로 유배되었다가 4년 만에 풀려났다. 그 뒤 陶庵 李緯·黎湖 朴弼周와 더불어 經書와 禮說을 강론하였다. 영조 21년(1745) 經學과 품행을 인정받아 萬寧殿參奉에 제수되었고, 이듬해에는 恭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동왕 24년(1748)에 繕工監監役に 제수되었고, 정조 2년(1778)에는 특례로 右承旨에 임명되었다. 정조 8년(1784)에 同知敦寧府事に 오르고, 동왕 10년(1778)에는 工曹判書에 이르렀다. 학문과 典敎에 깊어 士類들로부터 人望이 높았던 인물이다.

任聖周: 숙종 37년(1711)~정조 12년(1788). 본관은 豐川. 자는 仲思, 아호는 鹿門. 陶庵 李緯의 門人으로 『餞別詩帖』의 작자 중 유일하게 中宗회와 나이가 같은 사람이다. 영조 9년(1733) 司馬試에 합격, 동왕 26년(1750) 世子翊衛司洗馬가 되고 侍直에 승진하였으나 곧 사직하고, 동왕 32년(1758)부터 公州의 鹿門에서 隱居하였다. 정조가 즉위한

76) 上揭書 英祖 27年 2月 庚午條. “上, 親行都政, … 金陽澤爲校理 …”

77) 上揭書 英祖 27年 3月 庚戌條. “以弘益三爲承旨, …”

78) 上揭書 英祖 27年 9月 壬申條. “以成天柱爲司諫, … 俞彥述爲輔德 …”

뒤 세자의 승을 지낸 뒤 지방관을 역임하였으며, 그 뒤 녹문으로 낙향하여 은거하면서 학문연구로 여생을 보냈다. 저서로는 『鹿門集』 26권이 있으며, 시호는 文敬이다.

李宜哲: 숙종 29년(1703)~정조 2년(1778). 본관은 龍仁. 자는 原明, 아호는 文菴. 영조 3년(1727) 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으며, 그 뒤 長陵參奉과 軍資監奉事 등을 지냈다. 동왕 24년(1748) 春塘臺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이듬해에는 檢閱이 되었다. 동왕 26년(1752) 사간원의 正言으로 재직 시 言路의 확대를 주장하였고, 그 뒤 持平과 大司諫을 거쳐 승지에 올랐다. 동왕 45년(1769)에 전라도 儒生들이 南溪 朴世采를 文廟에서 黜陟하라는 상소를 올렸을 때 유생들을 옹호하다가 진도로 유배된 적이 있다. 영조가 죽자 왕의 行狀과 謚狀을 짓기 위해 세워진 撰集廳에서 樊巖 蔡濟恭과 함께 堂上이 되어 이를 주관하였다. 정조 즉위 뒤에는 예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바 있다.

俞彥民: 숙종 35년(1709)~영조 49년(1778). 본관은 杞溪. 자는 伊天, 아호는 石隱 또는 棄齋. 영조 8년(1732) 進士詩에 합격하여 都事·直長·佐郎 등의 직을 역임하였다. 동왕 19년(1743)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주로 三司에서 관직을 맡았다. 동왕 34년(1758)에는 當直 承旨로 莊獻世子の 평양밀행을 막지 못하였다 하여 罷職된 적이 있다. 그 뒤 復官되어 吏曹參議·大司成·禮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전별시를 지은 해에는 世孫講書院의 左翊善에 임명되어 직을 수행 중이었다.⁷⁹⁾ 동왕 47년(1771)에 都承旨를 거쳐 江華府留守가 되었다.直言을 잘해 왕으로부터 미움을 사 한때 구금을 당하기도 하였다. 시문에 뛰어났으며, 저서로 『石隱集』이 있다.

宋瑩中: 경종 1년(1719)~정조 10년(1786). 본관은 礪山. 자는 君玉. 『錢別詩帖』의 작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인물이다. 영조 21년(1745)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世子侍講院의 說書가 되었다. 동왕 24년(1748) 先陵에 대한 왕의 親祭에 執事로 差定되었음에도 불참한 죄로 星州에 유배된 적이 있다. 이듬해에 유배에서 풀려 다시 설서를 거쳐 정언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때 蕩平策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관직을 삭탈당했다. 동왕 30년(1754)부터 副校理·副修撰·兼司書·修撰·文學을 역임하고 승지를 거쳐 대사간이 되었다. 동왕 37년(1761)에 다시 승지가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義州府尹으로 나갔다. 의주부윤으로 재직 시에 灣商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단속하지 못하였다는 죄로 파직되어 유배되었다. 동왕 39년(1763)에 승지로 다시 기용되었으며, 한동안 江原道觀察使를 지내다가 돌아와 대사헌과 호조참판을 역임하였다. 동왕 46년(1770)에는 冬至使의 副使로 燕行을 다녀온 적이 있다. 영조 末年에 대사헌으로 僻派에 속했던 그는 같은 벽파였던 좌의정 洪麟漢을 비호하는 疏를 올렸다가 반대파인 時派측의 탄핵을 받고 벼슬이 삭출되었다. 정조의 즉위와 더불어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薪智島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⁸⁰⁾

79) 上揭書 英祖 27年 7月 庚午條. “以李鼎輔爲左尹, … 俞彥民爲左翊善 …”

이상에서 살펴본 「餞別詩帖」의 주요 작자들에 대하여 時作 당시와 그 이전의 주요 관직활동 및 당파와 학맥을 아래의 <표 2>로 제시해 보았다.

<표 2> 주요 작자의 관직활동과 성향

姓 名	時作 當時와 以前의 主要 官職	黨派 또는 學脈	備 考
李箕鎮	獻納, 大司成, 大司諫, 刑曹判書, 廣州府留守		
元景夏	正言, 判敦寧府事 겸 世孫傳	蕩平派	
李天輔	校理, 獻納, 掌令, 兵曹判書	老論	
洪啓禧	正言, 忠淸道觀察使, 兵曹判書	老論, 李縉 門人	
洪鳳祚	獻納, 執義, 大司成	老論	
李益輔	承旨, 左承旨		詩作 당시 遞職
金時粲	對校, 修撰, 承旨	老論	
金陽澤	獻納, 大司成, 大提學, 校理		
洪益三	獻納, 校理, 弼善, 司諫, 承旨		
俞彥述	檢閱, 司諫, 輔德(世子侍講院)	老論	
金用謙	繕工監監役	李縉 門人	
任聖周	世子翊衛司洗馬	李縉 門人	詩作 당시 隱居
李宜哲	檢閱		
俞彥民	承旨, 大司成, 禮曹參判, 左翊善		
宋瑩中	說書, 正言	僻派	詩作 당시 官職 創奪

전별시를 지어 조중회에게 보내준 작자들의 時作 이전 관직활동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김기진, 원경하, 이천보, 홍계희, 홍봉조, 김양택, 홍익삼, 유언술, 송영중 등 대부분의 작자가 言官職을 거쳤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司憲府의 掌令, 執義와 司諫院의 正言, 獻納, 司諫, 大司諫 등의 직을 맡아 수행한 것이다. 조중회 역시 관직생활 초기인 영조 19년(1743)에 정언에 임명된 적이 있고, 동왕 25년(1749)에는 헌납에 올라 諫官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들 중에서 송영중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작자가 조중회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兩司에서 조중회와 함께 활동하거나 이미 언관직을 거쳐간 선배들이었다. 조중회가 사간

80) 이상의 인물에 대해서는 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인물대사전」에서 내용을 발췌하였고, 전별시를 지을 당시의 관직활동 등에 대해서는 필자가 「朝鮮王朝實錄」의 기사에서 내용을 추가하였다.

원의 정언으로 임명되자마자 자신이 올린 상소로 削職되어 오랜기간 동안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던 사실은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 있다.

이들 작자들은 모두 朋黨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蕩平策을 편 英祖年間に 주로 정치활동을 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영조의 뜻을 받들어 탕평책의 실시를 주장한 탕평파는 원경하 한 사람뿐이고, 이천보, 홍계희, 홍봉조, 김시찬, 유언술 등은 여전히 老論에 속하는 정치가이다. 또한 홍계희, 김용겸, 임성주 등은 영조의 탕평책을 가장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도암 이재의 문인이다. 전별시의 수급자인 조중회도 이재의 문인이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연행의 전별시를 짓기 2~3년 전에 자신들이 淸나라와 日本으로 使臣을 다녀와 사신으로서의 어려움을 몸소 겪은 사람도 있다. 이기진과 유언술은 영조 25년(1749)에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을 다녀온 적이 있고, 홍계희는 동왕 24년(1748)에 通信使로 임명되어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는 것이다.

전별시 작자와 수급자 조중회와 간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 당파와 학맥 등에 있어서의 同質性이 엿보이긴 하지만 작자들 상호간에는 그렇지 못한 일면도 보인다. 이기진과 원경하는 관직생활 중의 마찰로 각기 정치적 풍랑을 겪었고, 원경하와 이천보는 동갑지간이었지만 후에 絶交하여 원수와 같은 사이로 지냈던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었지만 조중회가 연행을 떠난다고 하자 각기 전별시를 지어 보내주었다는 것은 실로 흥미로운 사실이다.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조중회는 군선 품성과 원만한 인간관계로 특히 윗사람들에게서 두터운 信任을 얻었고, 또한 상호간에 인간적 情理가 통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다.

4. 「餞別詩帖」의 내용

시문을 읽을 수 없는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 「餞別詩帖」은 모두 32장에 걸쳐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형식별로 나누어 보면, 七言詩가 20장, 五言詩가 4장, 文章이 8장이다. 칠언시의 경우, 1首만을 싣고 있는 장은 7장인데 반해 2~4

首로 구성된 장은 13장에 이른다. 오언시의 경우는 1首만 수록된 장과 2~4首로 구성된 장이 각기 2장씩으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시문 중에서 대표적인 칠언시와 오언시 몇 편을 골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맨 첫장에 수록된 牧谷 李箕鎭의 시이다.

南城風雪耿無眠	남쪽 고을에도 눈바람부니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데,
默算腥膻過百年	가만히 셈해보니 살찌 누린내 난지가 백년도 지났네.
珍重使車驅莫緩	진중하게 수레와 말을 몰아도 늦지는 말아야하니,
中原消息佇歸傳	우두커니 서서 중원소식 돌아와 전해주길 기다리네.

七言絕句詩로 각 行의 끝 글자에 모두 押韻을 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시의 작자인 이기진은 조중회가 연행을 떠나기 2년 전 같은 계절에 冬至使로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다. 험난한 여정과 한겨울의 추위를 이미 경험한 바 있는 그로서 아끼는 후배에 대한 걱정과 배려를 시에 담고 있다. 2行에서는 아마도 작자 자신이 나아가 들어 나태해진 자신을 채찍질하는 심정을 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단순한 걱정뿐만 아니라,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燕行사절을 이끌되 너무 늦게 움직여 북경에 도착하는데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된다는 충고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무사히 연행에서 돌아와 再會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結句에서 표현하고 있다.

皮幣 ⁸¹⁾ 行人履	사람들은 가죽과 비단을 신고 나서고,
悲歌渡鴨江	슬픈 노래는 압록강을 건너가네.
晦翁 ⁸²⁾ 八字義	회옹의 팔자는 의로웠건만,
苦血尙盈腔	고혈은 항상 뱃속에 가득했다네.

위는 蒼霞 元景夏의 五言絕句詩이다. 2행에서 한겨울에 얼어붙은 압록강을 渡江해야 하는 고난을 슬픈 노래를 부르며 건넌다고 표현하고 있다. 宋나라 朱熹를 이 시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마도 주희와 같은 대학자도 평생 의롭게 살았지만 고통은 상존하였으니, 연행의 어려움을 굳건하게 이겨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81) 가죽과 비단. 옛날의 禮物이니 朝貢物을 의미.

82) 宋의 儒學者 朱熹의 號.

것이다. 원경하는 조중희보다 13살 위인 정치가이다. 연행에 나서는 후배를 위한 격려의 마음이 배어 있는 시로 해석된다.

다음은 당시 兵曹判書의 직을 수행하고 있던 晉庵 李天輔의 시이다.

薊野寒生學士車	마게풀 자라나는 추운 겨울에 그대는 수레를 이끌고,
朝衣推(?)雪拜穹廬 ⁸³⁾	눈 내린 아침에 의관을 갖추고 오랑캐에게 절을 하네.
玉河館 ⁸⁴⁾ 裡孤燈夜	옥하관의 밤을 밝히는 외로운 등불,
應憶天門舊上書	문득 예전에 대궐에서 올린 상소문이 생각나네.

명이 망하고 청나라가 건국한지 9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 『餞別詩帖』에 실린 시의 저작 연도를 ‘崇禎紀元後幾年’식으로 기재하여 淸의 年號를 피한 것이 3장이나 보인다. 위의 시에서 작자인 이천보 역시 청의 朝廷을 오랑캐라고 표현하여, 명나라를 흠모하고 북방 민족이 건국한 청나라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공문서가 아닌 사적인 시문이나 書簡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수급자인 조중희는 관직생활의 초반기에 왕에게 올린 상소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은 바 있다. 작자 또한 詩作 이전 상당기간 동안 言官職에 머물면서 諫官들이 겪는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였다. 結句에서의 표현은 이와 같은 작자와 수급자간의 과거 경력에서의 동질성을 앞세워 작자의 인간적인 친밀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된다.

燕山萬餘里 ⁸⁵⁾	燕京은 만여 리나 떨어져 있고,
四牡 ⁸⁶⁾ 遠于征	사신들은 먼 길을 떠나네.
欲識行臺操	궁성에 가서 행하는 지조를 알고 싶은데,
冰心一片淸	한조각 얼음과 같은 마음은 맑기만 하네.

83) 穹廬: 옛날 유목민이 거주하던 천막. 중국 북방 민족. 여기서는 淸나라 朝廷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84) 北京의 使臣이 머무는 朝鮮館을 말한다.

85) 漢城에서 燕京까지의 실제 거리는 3千 餘里인데, 여기서 萬餘里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연경에 이르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86) 수레를 끄는 네 마리 숫말. 使臣을 지칭.

위는 영조·정조연간에 정치가보다는 학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嘯嘯齋 金用謙의 詩이다. 五言絶句로 된 詩로서 해석이 쉽지는 않다. 작자는 辛壬士禍로 인하여 4년간 유배를 당한 적이 있고, 이후에 학문과 품행을 인정받아 두 차례나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연행을 떠나는 조중희에게 조선의 사신으로서 품행과 지조를 지키라는 뜻에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2行과 4行의 마지막 글자로 압운을 이루었다.

다음은 「餞別詩帖」의 작자 중 유일하게 조중희와 나이가 동갑인 鹿門 任聖周의 詩이다.

驪陵松柏暮雲縈
遺恨千秋鬱未平
皮弊年年空走拜
不知何處有荊卿⁸⁷⁾

여릉의 송백에 저녁 구름이 얹히고,
천추에 남은 한이 가슴에 맺혀 평온하지 못하네.
해마다 가죽과 비단을 실고 헛되이 달려가 절하니,
험한 일하는 사신들은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네.

兩甲⁸⁸⁾如今百載餘
重陰何處一陽嘘
憑君寄語悲歌士
密密護持晚老⁸⁹⁾書

양쪽이 전쟁을 치른 지 백년도 더 지났는데,
그들만 거둬지고 한줄기 빛은 어디에서 비추어주나.
임금께 기대어 선비는 슬픈노래를 전하니,
남몰래 晩村선생의 책을 보호하여 간직하고 싶네.

晩老詩書日月光
焚餘猶想壁間藏
購得千金豈無道
好須携取入華陽

만촌선생의 詩書는 해와 달처럼 빛나니,
焚書에도 남아 벽속에 간직되기를 바라네.
천금을 얻는 데에 어찌 도리가 없겠는가,
모름지기 거두어 가지고 화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네.

七言絶句 3首를 連作한 형태이다. 작자 임성주는 末尾에 기재한 자신의 성명 앞에 ‘友人’이라고 표시하여 수급자인 조중희에게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친구에게 주는 詩인만큼 자신의 속마음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 제1首에서 오랑캐가 세운 淸나라에 매년 조공품을 바쳐야 하는 못마땅함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다.

87) 荊卿: 험난한 일을 감행하는 사람.

88) 양쪽의 甲兵, 즉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丙子胡亂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9) 晩老: ‘晩老即呂晩村留良’이라고 본문 여백에 註解되어 있다. 즉 晩老是 淸나라 呂留良을 말한다. 그는 明이 망하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며, 이후에 文字獄으로 剖棺斬屍를 당하였고 그의 著書도 소각되었다.

제2·3首에서는 明이 멸망하자 중이 되어 이름도 바꾸어버린 晩村 呂留良을 내세워 자신 역시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명나라만을 흠모한다는 심정을 나타내었다. 청나라를 비판한 만춘의 著述은 후에 燒却되어 이제는 볼 수 없으니 작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시에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작자는 20대 젊은 시절에 이미 司馬試에 합격하여 出世의 길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벼슬은 거의 하지 않고 隱居하면서 학문 탐구에만 몰두한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삶은 청에는 굴복하지 않은 만춘선생에게서 받은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떻든 이 시에서는 연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격려나 배려보다는 작자 자신이 그간 품어왔던 懷抱를 토로하는 듯한 내용이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往年丞相使遼河
駿馬金鞍得意多
獨有當時蹈涉客
燕南去和筑聲歌

예전의 승상들은 사신으로 요하를 건널 때,
금 안장에 준마를 타고 뽐내면서 갔는데,
그 당시를 그대로 따를 사람 당신뿐이니,
연남에 가서 비파에 맞추어 노래 부르시오.

위의 詩는 宋瑩中の 七言絶句詩이다. 송영중은 조중희보다 8살 연하로 생몰년이 밝혀진 『餞別詩帖』의 작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그도 또한 時作 이전에 正言에 임명되어 언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윗사람에게 드리는 전별시답게 예전의 선배들이 행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연행을 다녀오라는 응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行과 2行 및 3行的 끝 글자로 押韻을 이루었다.

이상으로 『餞別詩帖』에 수록된 여섯 사람의 시를 소개해 보았다. 18세기 중반의 시대적 상황과 개별 작자들의 사고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시를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전별시의 내용은 대략 험난한 여정을 출발하는 사신에게 용기를 가지라는 격려의 내용, 조선의 사신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충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나라에 조공을 해야 하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도 이러한 충고의 의미로 쓰였을 것이며, 그러한 기회에 그간 작자가 품었던 회포도 함께 풀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5. 結 言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필사본 「餞別詩帖」은 英祖 27年(1751) 謝恩兼冬至使의 書狀官으로 燕行을 떠나는 趙重晦를 송별하는 33인의 시문을 모아 엮은 책이다.

(2) 전별시의 수급자인 조중회는 肅宗 37年(1711)부터 正祖 6年(1782)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다. 英祖 12年(1736)에 文科에 及第한 뒤 초기에 正言과 獻納 등 언관직에 주로 종사하였다. 이후 罷職과 遞職 및 流配 등의 정치적 굴곡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正祖 3年(1779)에 病으로 辭職할 때까지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으며 朝廷의 주요 官職을 두루 거쳤다. 영조 末年에는 六曹에서 戶曹와 刑曹를 제외한 나머지의 判書職을 모두 歷任한 바 있는 실력있는 정치가였다. 도암 李緯의 문인으로 老論系의 정치가로 파악된다. 상소로 인한 파직사건과 그의 卒記에 나타난 英祖의 評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의리를 중시하는 군선 품성의 소유자로 짐작된다.

(3) 「餞別詩帖」의 형태는 전체 크기가 47.0×50.0cm로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표지를 제외한 본문은 모두 34장에 이른다. 필사된 낱장의 시문을 1장씩 壯紙에 붙였고, 1편의 시문은 내용이 길어서 2장에 이어 붙였으므로 수록된 시문은 모두 33편이 된다. 본문을 이루고 있는 시문은 폭이 32.7cm가 대부분인데, 폭이 가장 좁은 것은 27.4cm이고 가장 넓은 것은 40.3cm인 것도 있다. 용지 중에는 우측 하단부에 四君子가 찍혀진 詩箋紙가 모두 5장이 보이는데, 난초가 찍혀진 시전지가 2장, 매화, 국화, 대나무를 찍은 시전지가 각 1장씩이다. 시문을 쓴 해는 모두 辛未로 되어 있어서 실록의 기록과 같이 그가 북경으로 출발한 해인 영조 27年(1751)과 일치한다. 시문을 지은 날짜는 ‘孟冬’ 또는 ‘陽月下澣’과 같이 대략적인 시기를 적은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달과 일자를 명시한 것도 보인다. 즉 ‘至月之朔’은 음력 11월 초하루이고, ‘冬至前一日’로 쓴 것은 10월 30일을 나타낸 것이다. 조중회가 연행을 떠난 날짜가 11월 7일이니 떠나기 직전에 知인들이 각기 시문을 지어 보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문의 書體는 작자들이 손수

쓴 것이라 楷書體와 行書體 및 草書體 등으로 다양하고 篆書로 쓴 시문도 1장이 보인다. 紙面은 변색이 되거나 가장자리에 얼룩이 번진 면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4) 시문의 작자는 주로 자신의 字를 기재하고 있는데, 성과 자를 함께 기재한 것도 있지만 姓의 표기없이 字만을 쓴 경우가 다수 있어서 작자를 밝히기가 무척 까다롭다. 본고에서 작자의 성명을 밝혀낸 사람은 모두 24명인데, 그 중 성명과 生沒年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인물은 16명이다. 작자를 연령으로 살펴보면, 수급자인 조중회와 나이가 同甲인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나이가 아래인 사람은 3명이며, 그 외 나머지 작자 12人是 모두 조중회보다 나이가 많은 인물이다. 이들 중에는 李箕鎮, 元景夏, 李天輔, 洪啓禧, 洪鳳祚 등과 같이 영조연간에 주로 활동한 유명 정치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작자들의 時作 이전 관직활동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작자가 조중회처럼 言官職을 거쳤다는 점이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兩司에서 조중회와 함께 활동하거나 이미 연관직을 거쳐간 선배들인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陶庵 李縉의 문인이 많고, 정치적으로는 노론계가 다수 있다는 사실도 조중회가 주로 그러한 부류의 인물들과 交遊하였음을 말해 준다.

(5) 시문을 읽을 수 없는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 『餞別詩帖』은 모두 32장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형식별로 나누어 보면, 七言詩가 20장, 五言詩가 4장, 文章이 8장이다. 칠언시의 경우, 1首만을 싣고 있는 장은 7장인데 반해 2~4首로 구성된 장은 13장에 이른다. 오언시의 경우는 1首만 수록된 장과 2~4首로 구성된 장이 각기 2장씩으로 되어 있다.

(6) 본서에 수록된 6人的 칠언시와 오언시를 해석해 본 결과, 시의 내용은 대체로 험난한 여정을 출발하는 使臣에게 용기를 가지라는 격려의 내용과 朝鮮의 사신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충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북방의 오랑캐가 세운 淸나라에는 굴복하지 않고, 또한 그런 나라에 朝貢을 바쳐야하는 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내용이 적지 않게 보인다. 明나라를 흠모하고, 丙子胡亂으로 당했던 굴욕이 舊怨이 되어 당시까지도 우리의 선비들의 가슴에 殘存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연행을 떠나는 조중회를 송별하는 「餞別詩帖」에 대하여 주로 書誌的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앞으로 본고에서 소개하지 못한 시문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이 책이 가지는 인물사와 국문학 연구의 자료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原典]

金昌業 著. 「老稼齋燕行日記」.

朴趾源 著. 「熱河日記」.

「燕行路程記」. 寫本. 서울대 奎章閣本.

李箕鎮 等著. 「餞別詩帖」. 寫本. 大田廣域市先史博物館 所藏本.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8.

洪大容 著. 「을병연행록」. 崇實大學校博物館 所藏本.

[著書 및 論文]

金正喜 著 ; 鄭後洙 譯. 「秋史 金正喜詩 全集」. 서울: 풀빛, 1999.

閔丙秀. 「韓國漢詩史」. 서울: 太學社푸른역사, 1996.

朴光用. 「영조와 정조의 나라」. 서울: 푸른역사, 1998.

朴光用. “당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한국사」 32. 國史編纂委員會.

소재영 등.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서울: 박이정, 2004.

유홍준, 이태호 편.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 조선시대 계획도와 전별시」. 서울: 학고재, 2000.

曹斗鉉. 「漢詩의 理解」. 서울: 一志社, 1976.

최소자, 정혜중, 송미령 편.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 서울: 해안, 200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인물대사전」. 서울: 중앙M&B, 1999.

홍대용 저 ; 소재영 등 주해. 「주해 을병연행록」. 서울: 태학사, 1997.

